

[별표 1] <개정 2005.8.5, 2006.3.8>

보전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의 범위(제7조제1항관련)

구 분	협 의 대 상 지 역 등
1.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육역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2.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고도(古都)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보존구역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3.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고속철도건설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
	「농어촌정비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예정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의 규정에 의한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구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매센터의 지정과 관련된 지역 등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9조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권역·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과 동법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지역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 진흥지구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 및 허가과 관련된 지역 등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